

지하수 관리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년 4월 23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안 제7조 및 제15조 제3호를 우리군의 인구, 공무원 수, 의원수, 관내 사회단체 실정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위원회의 특별회계 사용처 지정을 원활히 하고자
- 나.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함임

2. 수정주요골자

- 가. 안 제7조 제1항중 "11인"을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 나. 안 제7조 제2항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군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
- 다. 안 제15조 제3호중 "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수정

지하수 관리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년 4월 23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하수 관리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11인"을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안 제7조 제2항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만, 군소속 공

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

안 제15조 제3호중 "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수정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1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u>한다.</u></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15조(세출) 생략</p> <p>1. ~ 2. 생략</p> <p>3. 기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u>위원회에서</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 -- 9인 -----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u> <u>에서 호선한다.</u></p> <p>②----- ----- ----- <u>하되 다만, 군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총수의 2분의 1을초과하지 않아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15조(세출) 생략</p> <p>1. ~ 2. 생략</p> <p>3. ----- ----- <u>군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일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함.(안 제4조)
- 다. 일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마.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 예산편성·결산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함

- 바.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내지 제21조)
-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정함.
- 사.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특별회계 설치 필요함
-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결과 이견 없음
- 라. 입법예고 실시(2006. 11. 10 ~ 11. 30)결과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 외의 부분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군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2제4항제1호 내지 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기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예산편성·결산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9조(가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동이용명령에 의한 지하수공동이용시설
2.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취수량
3.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취수량(지열이용 후 회수된 지하수량)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반행위 조사서

(제22조 관련)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년 월 일

진술인 : (인)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제22조 관련)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 원(W)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균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제22조 관련)

납부 의무자	① 성명또는 상 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25조 관련)

제 호

수 신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발신 : 평 창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조와 관련됩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위반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통보하오니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① 성명 또는 상 호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②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 금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일자	

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관 계 법 령 발 취

□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생략)

②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⑦(생략)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⑦(생략)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③(생략)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생략)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생략)

②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⑨(생략)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④(생략)

□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26조의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생략)

[본조신설 2001.12.19]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11.30>

1.~2.(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 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④(생략)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9.5.14, 2002.1.4, 2005.12.21>

1. ~ 4.(생략)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⑨(생략)